

#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8월 2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(2003년8월29일) 상정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여성복지과장 김정숙)

### □ 개정이유

- 부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 등으로 여성발전사업 등의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금조성 목표달성액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함.  
(안 제2조제2항)
- 현 행 :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출연조성
- 개 정 :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20억원 조성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 | 답변 내용 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여성복지기금 지원단체의 자부담율이 평균적으로 20%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자부담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?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원금 정산시 시 자부담에 관한 사항은 관계서류 등 증빙서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한 바는 없지만 향후에는 철저히 확인 하겠습니다</li> </ul>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부담율을 50%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?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50% 이상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관련단체(기관)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</li> </ul>  |

### 4. 토론요지

#### 가. 찬성토론

- 없음

#### 나. 반대토론

- 없음

### 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

- 기금 관리는 형식적인 정산보고서로만 처리하는 것으로 현장확인 등의 절차로 검토 확인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산보고서에 대한 실지 확인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람

- 기금도 시민의 세금인 만큼 적절한 사업에 지원되어 많은 시민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금 정산시 영수증을 세밀히 검토하여 허위로 작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

##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 | 제172호                 |
| 의결<br>년월일 | 2003. 9. 3<br>(제106회) |

제출연월일 : 2003. 8. 22.

제출자 : 부천시장

### □ 제안이유

- 부천시여성발전기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의 금리인하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등으로 여성발전사업등의 지원이 어려움에 따라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.

### □ 주요골자

-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기금조성 목표달성액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함 (안 제2조제2항)
  - 현행 :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출연
  - 개정 :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 20억원 조성

부천시조례 제 호

## 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2002년까지 출연완료된 10억원  
이외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20억원  
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조표

| 현    행  | 개    정    안   |
|---|---|
|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(생 략)<br/>           1. ~ 2. (생 략)<br/> <u>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</u><br/> <u>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</u><br/> <u>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출연한</u><br/> <u>다.</u></p> |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(현행과 같음)<br/>           1. ~ 2.(현행과 같음)<br/> <u>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</u><br/> <u>은 2002년까지 출연완료된 10억원</u><br/> <u>이외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</u><br/> <u>1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총20억원</u><br/> <u>으로 한다.</u></p> |